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2. 6. 13.(월)

www.jeonbuk.go.kr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051호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1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공고 제2022-1051호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1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6월 13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 김대영(063-280-2596)
2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윤종현(063-280-4625)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최승순(063-280-2493)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6.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1.6.10.)됨에 따라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
-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국가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1.12.9.)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가. 「전자정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의 용어 충돌에 따른 정비
 -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변경(안 제2조~제7조, 제10조~제12조, 제13조~제15조, 제20조)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
 -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안 제4조제3항제9호, 제10조제4항제7호, 제12조의2제2호, 제21조)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로 변경(안 제12조의2)
-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확화
 - 전자정부법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제11호)
-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삭제된 규정 반영(안 제4조제4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부문계획(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저작권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제17조)
- 바. 영문 표기를 한글 용어로 정비(안 제7조, 제12조의2)
- 사.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지식정보'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법무행정과
- 라. 입법예고 : 2022. 5. 6. ~ 5. 26.(20일간)

4.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을 “(정보화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본계획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

제4조제2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정보통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화 시책”을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그 밖에”를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정보화”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ICT관련”을 “정보통신기술 관련”으로 한다.

가.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스마트 쉽센터) 운영 및 사업

제13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4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을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정보자원을”을 “국가지식정보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의6”을 “법 제52조”로, “인터넷중독의”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0조의8”을 “법 제54조”로,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50조”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및 「<u>전자정부법</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2. (생 략)</p> <p>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p>
<p>4. (생 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조(정보화의 기본원칙) ----- ----- <u>정보화</u>----- -----.</p>
<p>1. ~ 5. (생 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p>	<p>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p>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u>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u>정보화</u>----- ----- 「<u>전자정부법</u>」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 -----.</p>
<p>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고, 시·군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p>	<p><삭 제></p>
<p><신 설></p>	<p>③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 -----.</p>
<p>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p> <p>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p>	<p>1. <u>정보화</u> -----</p> <p>2. <u>정보화</u>-----</p>

3. ~ 8. (생략)

9.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생략)

<신설>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기본계획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 ⑧ (생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 ~ 8. (현행과 같음)

9.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10. (현행과 같음)

1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2. ----- 정보화-----

<삭제>

제5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 정보화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정보화-----

④ ----- 기본계획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자문한다.

- 1. ~ 3. (생략)
- 4.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 관련 정책개발
- 5. ~ 8. (생략)
- 9.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③ (생략)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1. ~ 6. (생략)
- 7. 정보격차의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8.·9. (생략)

제11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둔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그 밖에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정보통신기술 -----
- 5. ~ 8. (현행과 같음)
- 9. ----- 정보화-----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 정보화 -----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

- 1. ~ 6. (현행과 같음)
- 7.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8.·9.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정보화-----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및 그 밖의 -----.

- ② ----- 정보화-----
- ③ ----- 정보화-----.

제12조의2(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가.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나. (생략)

- 3. (생략)
- 4. ICT관련 인력양성과 홍보사업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와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내 공공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7조(저작권 등록) 도지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제12조의2(분야별 정보화 사업 추진) -----

----- 범위-----

1. (현행과 같음)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가. 전북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스마트쉽센터) 운영 및 사업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기술 관련 -----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정보화-----

② ----- 정보화-----

정보화 - -----

제14조(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 정보화 -----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보화-----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등) ① ----- 국가

지식정보를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p><u>한다.</u></p> <p>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도지사는 도민이 <u>지역정보화</u>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1조(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u>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u>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법 제30조의6에 따라 <u>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u>를 위하여 <u>인터넷중독대응센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법 제30조의8에 따라 <u>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u>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u>정보격차해소교육</u>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u>범위내</u>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 <u>정보화</u>----- ----- -----.</p> <p>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① --- ----- <u>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u>----- -----.</p> <p>② ----- 법 제52조----- <u>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u> ----<u>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센터</u>----- -----.</p> <p>③ ----- 법 제54조----- <u>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u>----- ----- -----.</p> <p>제2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법 제50조----- ----- ----- ----- <u>범위</u>----- -----.</p> <p>제25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p>
---	--

붙임1

관계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전자정부 기본법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안」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적 조례안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작성자

- 정보화총괄과 지방전산주사 김대영(063-280-2596)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6.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1. 제안이유

가. 법률 제명 변경('15년), 삼락농정위원회 출범('15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17년)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혁신위원회의 실무 논의 강화 등을 위해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4조)
- 다. 정기회 개최 시기를 매년 8월에서 매년 1회로 변경(안 제7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종합계획(5년 주기)과 연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 의 : 감사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 라. 입법예고 : 2022. 5. 6. ~ 2022. 5. 26.

4.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중 “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가”를 “농축산식품국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8월에”를 “1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전라북도)”를“(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다.</p> <p>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다.</p> <p>5. “생산자 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p> <p>6.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p> <p>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p> <p>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p> <p>6.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위원회의 설치) <u>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1. ~ 6. (생 략)</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⑤ (생 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농축산식품국장</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u>농축산식품국장이</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① (생 략)</p> <p>② 정기회는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생 략)</p>	<p>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전라북도)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u>종합계획 수립·시행</u>) ----- ----- <u>5년</u> ----- -----.</p>

붙임 1	관계 법령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13383호, 2015.6.22.)**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법률의 제명 변경, 당연직 위원 변경,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 등 일부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3. 작성자

- 농산유통과 지방농업주사 윤종현(063-280-4625)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6.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이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기본장르 규정에 복합장르 사용료 규정 추가 및 운영 시간을 현행화하고, 신규 장비 취득과 최저 시급 인상 등으로 변경되는 부대설비 사용료 및 인력지원비에 대한 부과 근거 등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세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시설 사용료 장르 규정 개선과 운영시간 현행화(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
- 나. 부대설비 사용료 및 인력지원비 납부 근거 현행화(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
- 다. 사용 취소 환불 기준 명확화(안 제5조제3항제1호~제4호)
- 라. 위탁 기간(재계약) 연장 제한(안 제7조제3항)
- 마. 오타 수정 및 용어 정리(안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호, 제4호, 제4조,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 2항, 제17조)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사. 띄어쓰기로 인한 제명 변경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부서협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예산과, 세정과
- 라. 타 시도 공연장 사용료 기준 근거 현황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5. 10. ~ 5. 30.(20일)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문화전당” 이라 한다)” 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으로,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전당” 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공연” 을 “공연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내외” 를 “국내·외” 로 한다.

제4조 중 “특별한” 을 “특별히”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료 납부등)” 을 “(사용료 납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주최” 를 “주최·주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 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때 : 전액” 을 각각 “때: 전액 반환”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 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가” 로, “때 : 전액” 을 “때: 전액 반환”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이전에” 를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용자가” 로, “때 : 위약금” 을 “때: 전액의” 로, “잔액” 을 “잔액 반환” 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및” 을 “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회계연도개시” 를 “회계연도 개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되며” 를 “안 되며” 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전당원” 을 “전당”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전당” 을 각각 “전당” 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의 “문화전당원” 을 “전당”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기준 (제5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클래식 국악연무	뮤지컬 오페라 복합장르	행사 대중음악	
모악당	오전	200,000	400,000	700,000	1.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리허설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익일의 공연(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함. (1, 2항 미적용) 4. 공연(행사)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로 함 5.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6.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철야중의 하나를 말함.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7:00 - 야간 18:00 ~ 22:00 - 철야 22:00 ~ 02:00 ※ 새벽2시 이후의 대관은 승인하지 않음
	오후	250,000	450,000	750,000	
	야간	300,000	500,000	800,000	
연지홀	오전	70,000	170,000	350,000	
	오후	100,000	190,000	420,000	
	야간	120,000	220,000	450,000	
명인홀	오전	50,000	100,000	150,000	
	오후	70,000	120,000	170,000	
	야간	90,000	150,000	200,000	
국제회의장	1회	200,000			
야외공연장	1회	500,000			
전 시설	1일, 평당	기본료 500원 조 명 200원 냉.난방 800원			- 1일: 09:00 ~ 19:00 - 야간 : 19:00 ~ 24:00 (1일 사용료 추가) - 냉방: 6월 ~ 8월 의무적 가동 - 난방: 12월 ~ 2월 의무적 가동 - 기은 급변시 사용자 결정
	음향	30,000원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1일 1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	
피아노	그랜드대형(외산)		1공연	80,000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그랜드대형(국산)		1공연	60,000		
	업 라 이 트		1공연	20,000		
조명시설	모 약 당		1시간	4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 지 홀		1시간	30,000		
	명인홀(국제회의장)		1시간	20,000		
	조광기(외부기기용)		1일	500,000		
	무빙콘솔		1공연	200,000		
	무빙라이트		1대/1공연	50,000		
	LED PAR		1대/1공연	10,000		
	LED 무빙		1대/1공연	20,000		
	LED 스트로브 무빙		1대/1공연	20,000		
	PAR 64, 서스포츨,SL라이트		10대/1공연	20,000		
	PAR 46		1대/1공연	5,000		
포그머신액		1L	10,000			
음향시설	녹음(CD,MD,DAT)		1공연	30,000	- 녹음외의 본 공연시 기기 사용도 동일 적용 - 녹음시 공테이프 사용자 준비 - 마이크로폰에 사용되는 건전지 사용자 부담 (리허설 포함)	
	녹음(카세트테이프)		1공연	10,000		
	무선마이크		1일	20,000		
	유선마이크		1일	10,000		
	음향콘솔	단순재생		1일		30,000
		메인콘솔		1일		500,000
		확성		1일		50,000
	모니터스피커		1일	30,000		
	외부출력		1일	30,000		
	프로젝터-자막기 (모약당)		1일	150,000		
	프로젝터-자막기 (연지홀,명인홀)		1일	100,000		
	무선인터컴(5채널)		1일	100,000		
	유선인터컴		1일	10,000		
영사기 (35m/m)	공연중 사용		1회	30,000		
	영화만 사용		1회	100,000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1일 1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
효과장비	드라이아이스기		1대/1공연	20,000	- 1대 사용은 1회에 한함 - 재료 준비는 사용자 부담
	스모그기		1대/1공연	20,000	
	화니프로젝터		1대/1공연	50,000	
	핀스포트라이트(1kw)		1대/1공연	20,000	
	블랙라이트		1대/1공연	10,000	
	스트로브		1대/1공연	10,000	
	핀스포트라이트(3kw)		1대/1공연	30,000	
동시 통역 시설	동시통역시설		1식	200,000	- 수신기 1대당 500원씩을 별도 징수 - 1일 2회 이상 사용시는 1회 초과분에 대하여 50%를 할인함. (사전 승인없이 초과 사용시는 기본시설의 초과 사용료 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회의용마이크		1기/1회	20,000	
	수신기(200조)		1회	100,000	
무대시설	음향반사판	고정식	1공연	30,000	- 덧마루와 무용장판은 1일 1회 셋팅/철거를 기준으로 함
		이동식	1공연	100,000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회전무대		1공연	100,000	
	승강무대		1회	30,000	
	수평이동무대		1회	20,000	
	변형무대(계단,경사)		1회	50,000	
	덧 마 루		1일	100,000	
	보면대/접의자		1조/1일	2,000	
	무용장판	모악당	1일	150,000	
		연지홀	1일	100,000	
		명인홀	1일	50,000	
	합창 라이저		1일	100,000	
	덧마루-1,2단		1일	100,000	
	덧마루-3단		1일	150,000	
	덧마루-4단		1일	200,000	
	샤막		1공연	20,000	
	대 분장실		1일	30,000	
	세트바텐(10조)		1공연	20,000	
	리어,프론트 스크린		1공연	20,000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 부대설비 사용료는 1공연(1일 1작품)을 기준으로 하며 리허설을 포함한다.
낭·난방	모 악 당	1시간	100,000	- 낭방 : 6월~8월은 의무적 가동 - 난방 : 12월~2월은 의무적 가동 - 기온 급변시 사용자 결정
	연 지 흘	1시간	70,000	
	명인홀(국제회의장)	1시간	50,000	
	연습실	1회	20,000	
	세미나실	1회	20,000	
	귀빈실	1회	20,000	
	연회장	1회	20,000	
빔프로젝터	15,000Ansi	1일	500,000	
	10,000Ansi	1일	400,000	
	7,000Ansi	1일	200,000	
	국제회의장	1일	40,000	
연습실	대 연습실(50평 이상)	1일	50,000	
	소 연습실(50평 이상)	1일	30,000	
국제회의장	중회의장	1일	100,000	
	프레스센터	1일	50,000	
	세미나실	1일	50,000	
	연회장 사용료	1회	120,000	
	귀 빈 실	1일	50,000	
	분 장 실	1일	10,000	
	중 계 료	1공연	200,000	

3. 기본 기술스텝

(단위 : 명)

구 분	공연장별	계	무대감독	무대진행	조명	음향	기계	비고
공 연	모악당	5	1	1	1	1	1	
	연지홀	5	1	1	1	1	1	
	명인홀	4	1	-	1	1	1	
설 치	모악당	5	1	1	1	1	1	
	연지홀	5	1	1	1	1	1	
	명인홀	4	1	-	1	1	1	

4. 인력 지원비

(단위 : 원)

구 분	인 력	사 용 료	비 고
효과기기 운용 - 핀 스포트라이트 - 파니프로젝터 - 드라이아이스 - 모그머시인	1인/일당	100,000	- 기본 : 09시~18시(8시간) - 야간근무 : 18시 이후 (50,000원 추가)
무대 지원		100,000	
조명 지원		100,000	
음향 지원		100,000	

【별표 2】 <삭제 2016. 12.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u>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u>문화전당</u>은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에 둔다.</p> <p>제3조(업무) <u>문화전당</u>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 2. (생략)</p> <p>3. 전통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p> <p>4. 문화예술의 <u>국내외 교류사업</u></p>	<p><u>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한국소리문화의전당</u>----- ----- <u>필요한</u> -----.</p> <p>제2조(위치) <u>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u>-----.</p> <p>제3조(업무) <u>전당</u>-----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공연 지원</u></p> <p>4. ----- <u>국내·외</u> -----</p>

5.·6. (생 략)

제4조(시설물 등 사용) 문화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 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납부 등)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국가 또는 전라북도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문화전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 전액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
- 3.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전액
- 4.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위약금 10분의 1을 공제한 잔액

제6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문화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전당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5.·6.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물 등 사용) 전당-----

----- 특별히 -----
-----.

제5조(사용료 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주최·주관 하는 -----
-----.

③ -----
-----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 -----.

- 1. 전당-----
 때: 전액 반환
- 2. -----
 --- 때: 전액 반환
- 3.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가 -----
 ----- 때: 전액 반환
- 4.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용자가 -----
 ----- 때: 전액의 -----
 ----- 잔액 반환

제6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전당-----

----- . ----- 그
 렇지 않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전당-----

-----.

② 전당----- 또는

단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수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전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05. 11. 4, 개정 2016. 12. 30>

② (생략)

제10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라북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전라북도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예산 요구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수입금 등의 처리)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도비지원금 등 수입금을 문화전당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전당-----
-----위탁기간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 ① -----

-----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지원) ① ----- 전당 -----
-----.

② ----- 회계연도 개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안 되며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입금 등의 처리) -----

----- 전당 -----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전당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문화전당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전당 내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전당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의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문화전당원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제15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범위는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 전당 -----

-----.

② -----

----- 전당 -----

-----.

③ ----- 전당 -----

----- 전당 -----

-----.

④ ----- 전당 -----

-----.

제15조(수익사업) ① -----

----- 전당 -----

-----.

② ----- 범위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체운영규정) ----- 전당 -----

-----.

붙임1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개정예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작성자

- 문화예술과 정보화총괄과 지방사서주사 최승순(063-280-2493)

붙임2

관계 법령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 게 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 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 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